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74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예지・손 솔・박덕흠
김대식・고동진・송석준
최수진・김선교・유용원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

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 구호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2. 동물 구호에 관한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3.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10(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 구호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 구조·대피·임시보호 계획 2. 동물 구호에 관한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3.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